

# 총량제봉투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업체 과업지시서

총량제봉투 신용카드 결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를 “강복구”라 하고 계약상대방을 “결제대행업체”로 하여 다음과 이 계약을 체결한다.

## □ 주요사항

1.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든 신용카드를 대상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해야한다.
2. 카드사와 은행업무 정산업무는 결제대행업체에서 대행한다.
3. 카드사 및 은행과의 계약업무 수수료 약정체결 등 제반계약은 결제대행업체에서 대행한다.
4. 카드결제시스템에 소요되는 하드웨어, 통신회선 사용, 데이터 전송고 처리 등 정보처리 작업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는 업체에서 제공한다.
5.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6. 12. 31일까지로 한다.
6. 봉투판매대금 수납시에는 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하며, 익월에 강복구가 수수료를 지급한다.
7. 봉투판매대금은 신속히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결제관련 안내문자서비스 및 가상계좌 미납자에 대한 안내문자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9. 정산결과 실시간 확인 가능 및 결제마감 후 일일 정산이 용이해야 한다.
10. 주기적 정산관련 데이터를 제공한다.
11. 환불건에 대한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2. 오프라인 신용카드 단말기 및 카드승인 장비 지원한다.
13.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등 데이터 보안을 철저히 한다.

14.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목적외 사용금지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한다.
15. 원활한 결제시스템 운영을 위해 상시하자 및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16. 유지보수 연락망을 제출한다.
17. 장애유형별 조치사항 및 복구안방을 마련한다.
18. 장애복구는 무상으로 진행되며, 장애복구 지연과 관련하여 강북구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결제대행업체가 전체 변상한다.
19. 결제대행업체의 부도 및 기타 비상시에 대비한 정산대금 보장방안 마련한다.

## □ 기타

1.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요구는 협의에 의하여 수용해야하며, 추가로 지원할 항목이 있으면 제시할 수 있으며, 더욱 효율적이고 향상된 방안이 있을 시에는 서로 협의하도록 한다.
2. 계약상대방이 의무규정을 이행치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강북구청장이 제시하는 조건, 「전자금융거래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한 결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5.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표준위탁 계약서를 작성한다.